



| | |
|------|-------|
| 의안번호 | 제111호 |
|------|-------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서 원 의원 외 3명 |
| 제출연월일 | 2020. 8. 25. |

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111호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0. 8. 25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조배식, 김진호,
이계천

1. 제안이유

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사용자 등(안 제3조)
- 다. 운영 및 위탁관리(안 제5조)
- 라. 수탁자의 의무(안제 6조)
- 마. 지도감독(안 제7조)
- 바. 위탁계약의 해지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 22조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등

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논산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택시쉼터” (이하 “쉼터” 라 한다)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.
2. “택시운수종사자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)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논산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.

제4조(사용자 등) ① 쉼터의 사용 대상은 논산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정한다.

② 논산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③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
2.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
3. 상업적·정치적·종교적 행위
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
④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운영 및 위탁관리)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쉼터의 운영·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제7조(지도감독)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
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
3.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,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,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| 성 명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논산시의회 의원 | 서 원 의원 외 3명 |

▣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▣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**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**

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2.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

다. 일반택시운송사업: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·소형·중형·대형·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.

라. 개인택시운송사업: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(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·소형·중형·대형·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.